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09호(그2)
2022. 9. 1.(목)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25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인사운영상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4급상당) 신설(안 제3조제2항)
- (1명) 디지털수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